

月以後임으로 持續인 工事 遂行을 위해서는 翌年度 약 2個月分의 工事物量에 상당하는 豫算은 移越하는 것이 合理的일 뿐만 아니라 公企業法上 建設 또는 改良에 필요한 經費로써 支出原因 行爲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翌年度에 移越使用할 수 있도록 (地方公企業法第 30條)되어 있어 建設期間 中 事故移越은 불가피 함.

【'91豫算 事故移越 要因】

'91年度의 경우 地下鐵建設工事的 特殊性과 社會, 經濟的 與件變動 및 '90(1,800 億원), '91(300 億원) 政府追更으로 下半 期에 政府支援金(2,100 億원)이 配定되어 少 工期不足 등으로 事故移越 되었음.

- 施設費: '91年度 레미콘 및 시멘트 과당으로 管給資材의 적기 조달 차질과 建設景氣의 過熱에 따른 技能人力(地下鐵建設 有經驗 技能工) 부족으로 工事蹉跌
- 施設附帶費: 施設費 執行과 연관되어 執行하는 附帶費用으로 移越.
- 土地買入費: 土地所有者의 買收協議 불응 및 都市鐵道法 施行令 등 地下補償關聯 法規制定遲延으로 補償 蹉跌

○改善 對策

地下鐵建設工事的 특성상 익년도초 2個月(1-2月)工事物量의 事故移越은 불가피 하나 걱정한 工程計劃에 의한 合理的인 豫算編成과 工事促進으로 事故移越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음.

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李永和 地下鐵建設本部長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.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 겠습니다.

(報告)

1991會計年度 地下鐵建設本部 所管 歲入歲出 決算書 檢討報告

地下鐵 運輸事業 特別會計 決算

1. 歲入

○歲入豫算은 當初 6,996 億원 이었으나 追更 編成으로 1,611 億원과 300 億원은 看做 處理, 3,527 億원은 事故移越로 總豫算額은 12,435 億원이나 실제 收入額은 豫算額의 89.8%인 11,166 億원이었음.

○이는 地下鐵建設 收入 中 借入金 1,400 億원과 地方債 4 億4,900 萬원, 地下鐵建設 의 收入 中 地方債 8 億7,000 萬원이 歲入 缺損 되었기 때문임.

○國庫補助金으로 500 億원이 歲入으로 策定 되었으나 서울시地下鐵 施設物은 서울시 民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首都圈市民 전체 의 交通施設物이며 國家 基幹事業으로 생각하여 中央政府로 부터의 國庫補助金이 擴大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

2. 歲出

○歲出豫算은 當初 6,996 億원 이었으나 追更에서 1,911 億원이 增額되고 '90年 豫算 中 3,527 億원이 事故移越되어 최종 歲出 豫算은 12,435 億원임.

가. 事故 移越額

· 事故移越은 總 198 件에 3,052 億원으로 豫算現額의 24.5%로 나타났음.

그 理由를 工期不足으로 밝히고 있으나 前年度에도 3,500 億원을 事故移越 시키 는 등, 이는 地下鐵 建設事業의 속성상 한해로 끝나는 事業이 아니고 몇년간 계속되는 事業인데도 豫算은 當該年度 豫算으로 編成되는 便法을 사용하고 있 음.

· 이는 各 會計年度의 經費는 當該年度의 歲入으로 充當하라는 會計年度 독립의 原則에도 어긋나며, 繼續費 事業으로 豫算을 編成할 경우 몇년간 소요되는 豫算을 推計하여 繼續事業으로 豫算을

月以後임으로 持續인 工事 遂行을 위해서는 翌年度 약 2個月分의 工事物量에 상당하는 豫算은 移越하는 것이 合理的일 뿐만 아니라 公企業法上 建設 또는 改良에 필요한 經費로써 支出原因 行爲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翌年度에 移越使用할 수 있도록 (地方公企業法第 30條)되어 있어 建設期間 中 事故移越은 불가피 함.

【'91豫算 事故移越 要因】

'91年度의 경우 地下鐵建設工事의 特殊性과 社會, 經濟的 與件變動 및 '90(1,800 億원), '91(300 億원) 政府追更으로 下半 期에 政府支援金(2,100 億원)이 配定되어 少額 工期不足 등으로 事故移越 되었음.

- 施設費: '91年度 레미콘 및 시멘트 과당으로 管給資材의 적기 조달 차질과 建設景氣의 過熱에 따른 技能人力(地下鐵建設 有經驗 技能工) 부족으로 工事蹉跌
- 施設附帶費: 施設費 執行과 연관되어 執行하는 附帶費用으로 移越.
- 土地買入費: 土地所有者의 買收協議 불응 및 都市鐵道法 施行令 등 地下補償關聯 法規制定遲延으로 補償 蹉跌

○改善 對策

地下鐵建設工事의 특성상 익년도초 2個月(1-2月)工事物量의 事故移越은 불가피 하나 걱정한 工程計劃에 의한 合理的인 豫算編成과 工事促進으로 事故移越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음.

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李永和 地下鐵建設本部長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.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 겠습니다.

(報告)

1991會計年度 地下鐵建設本部 所管 歲入歲出 決算書 檢討報告

地下鐵 運輸事業 特別會計 決算

1. 歲入

○歲入豫算은 當初 6,996 億원 이었으나 追更 編成으로 1,611 億원과 300 億원은 看做 處理, 3,527 億원은 事故移越로 總豫算額은 12,435 億원이나 실제 收入額은 豫算額의 89.8%인 11,166 億원이었음.

○이는 地下鐵建設 收入 中 借入金 1,400 億원과 地方債 4 億4,900 萬원, 地下鐵建設 의 收入 中 地方債 8 億7,000 萬원이 歲入 缺損 되었기 때문임.

○國庫補助金으로 500 億원이 歲入으로 策定 되었으나 서울시地下鐵 施設物은 서울시 民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首都圈市民 전체 的 交通施設物이며 國家 基幹事業으로 생각하여 中央政府로 부터의 國庫補助金이 擴大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

2. 歲出

○歲出豫算은 當初 6,996 億원 이었으나 追更에서 1,911 億원이 增額되고 '90年 豫算 中 3,527 億원이 事故移越되어 최종 歲出 豫算은 12,435 億원임.

가. 事故 移越額

· 事故移越은 總 198 件에 3,052 億원으로 豫算現額의 24.5%로 나타났음.

그 理由를 工期不足으로 밝히고 있으나 前年度에도 3,500 億원을 事故移越 시키 는 등, 이는 地下鐵 建設事業의 속성상 한해로 끝나는 事業이 아니고 몇년간 계속되는 事業인데도 豫算은 當該年度 豫算으로 編成되는 便法을 사용하고 있음.

· 이는 各 會計年度의 經費는 當該年度의 歲入으로 充當하라는 會計年度 독립의 原則에도 어긋나며, 繼續費 事業으로 豫算을 編成할 경우 몇년간 소요되는 豫算을 推計하여 繼續事業으로 豫算을

編成한 후 議會 承認後 當該年度에는 年賦額을 따로 정하여 다시 議會의 承認을 얻는 節次上 번거로움을 피하고 當該年度 豫算을 編成 繼續事業時는 市長의 方針을 받은후 事故移越 시키는 便法은 會計年度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

나. 不用額을 項目別로 區分하면

· 豫算額 9,617億원 중 78.1%인 7,514億원이 執行되고 2,103億원이 不用처리되었음.

· 施設費
豫算額 7,083億원 중 89.5%인 6,344億원이 執行되고, 10.4%인 739億원이 不用되었음.

· 施設附帶費
豫算額 394億원 중 93%인 366億원이 執行되고, 7%인 27億원이 不用

· 土地買入費
豫算額 2,139億원 중 37.5%인 802億원이 執行되고 62.5%인 1,336億원이 不用處理 되었음. 이는 土地補償協議의 遲延으로 생긴것임.

· 投資管理費에서는
豫算額 75億원 중 86%인 65億원이 執行되고 14%인 9億8,000萬은 不用되었음.

이상과 같이 不用額은 事故移越豫算의 工期不足과 豫定價와 落札價의 差額 및 豫算執行 殘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豫算不用額이 2,707億원으로 豫算現額 12,435億원의 17.7%에 해당되며, 不用額이 이렇게 많이 發生하였다는 것은 무리하게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事業自體가 進行되지 않았거나, 증도에 變更되었으며 한편으로는 豫算의 過多策定이라고도 볼 수 있음. 따라서 차년도 豫算編成時에는 不用額이 過多發生되지 않도록 注意를 기하여야 할것임.

다. 豫算轉用으로는 施設附帶費 34億원을 施設費로 轉用

· 3號線 延長工事의 物價上昇 및 管給資材 物價引上分 등의 工事費 增額으로 이를 補填하기 위하여 施設附帶費 중 設計用役費 및 電動車 製作購買 附帶經費 등의 使用殘額으로 轉用시켰다고는 하나, 物價上昇 및 官給資材 引上은 3號線 延長工事 區間에만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며, 豫算編成時 物價上昇은 어느정도 豫測하여 計上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함.

라. 缺損金 補填錯誤

· 地方公企業法 第37條

“地方公企業은 每事業年度에 利益이 생긴 경우에는 前事業年度로 부터 移越한 缺損金이 있을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缺損金을 補填하고도 殘額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殘額의 1/20 이상의 金額을 利益積立金으로 積立하고, 나머지 殘額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減債積立金 또는 建設改良積立金으로써 積立 하여야한다.

· 이와같은 根據에 의하여 利益積立金, 減債積立金, 資本剩餘金 순으로 缺損金 補填에 充당하여야 하나 減債積立金を 제외시키고 利益積立金과 資本剩餘金으로 缺損 補填하였음.

· 地下鐵公社에서 積立한 減債積立金 49億원은 그 翌年度에 이미 借入金 572億원을 償還하였으므로 기설정된 減債積立金 49億원은 減債積立金이 아닌 任意積立金으로 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缺損 補填 한후 資本剩餘金으로 缺損補填 하여야 할것이라고 지난 決算檢査때 指摘된 바 是正되어야 할것임.

3. 豫備費 支出에 대한 決算

豫備費支出은 없었음.

.....

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李永和 專門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은 決算書에 대하여 質疑와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質疑와 答辯은 地下鐵建設本部長을 상대로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도록